환산협공고 제2026-04호

# 2026년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

폐자원 활용 및 자원순환을 위하여 새활용 산업의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을 지원하는 **'2026년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 참가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2월 4일

**한국환경산업협회장**

## 1 사업목적

### □ 사업목적

○ **(지원배경)** 자금 및 성장 여건이 부족한 새활용 기업을 발굴·육성하여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산업 활성화를 도모

○ **(사업목표)** 새활용 기업의 성장단계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사업화 자금 지원을 통해 사업 운영 초기부터 확장 단계까지 전주기에 걸친 시장 정착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새활용 생태계 구성

## 2 사업분야 및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공통)** 폐자원에 아이디어·디자인 등을 더해 새로운 방식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활용 제품을 생산·판매하거나 새활용 제품의 원재료로 활용가능한 소재를 생산하는 새활용 기업

○ **(도전분야)** 새활용 제품 개발 및 상용화에 관심이 있는 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협약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도 참가 가능

※※ 업력·매출액 규모를 충족하더라도, 아직 상용화된 새활용 제품이 없는 기업(기존 사업 영역이 非새활용인 기업도 포함)이 새활용 분야로 활동영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도전분야로 신청

○ **(성장분야)** 상용화된 새활용 제품을 보유한 법인 및 개인 사업자*

* 2025년에 새활용 제품 또는 소재를 판매하여 매출액이 발생한 사업자(증빙 제출 필수)

○ **(도약분야)** 업력 2년 이상이며('26년 제안서 제출일 기준), 2025년 매출액 3억 이상인 상용화된 새활용 제품을 보유한 법인 및 개인사업자

## □ 지원내용 및 요건

| 분야 | 지원내용 | 지원요건 |
|---|---|---|
| **도전** | ■ 신제품 개발, 시제품 제작, 제작 툴 마련, 시장 개척 등 제품 개발 및 상용화<br>■ 제품화에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인·검증 취득<br>■ 홍보·마케팅 및 판로 개척(사업화 성과물에 한함)<br>■ 창업 컨설팅(법률·경영·회계·세무, 마케팅, 디자인 등)<br>■ 소재 수거·유통 및 세척·가공 시스템 구축<br>■ 새활용 기업별 맞춤형 소재 가공·공급방안 개발 | ■ 새활용 제품 개발 및 상용화에 관심 있는 누구나 (새활용 분야로 활동영역 확대를 희망하는 非새활용 기업 포함) |
| **성장** | ■ 기존 제품 혁신 및 신제품 개발을 위한 시제품 제작, 제작 툴 마련<br>■ 생산·유통 시스템 구축<br>■ 소재·제품의 품질·성능·환경성 관련 인·검증 취득<br>■ 홍보·마케팅 및 판로 개척<br>■ 투자유치 활동(크라우드펀딩, 모의IR, 컨설팅 등)<br>■ 친환경 공정개선<br>■ 경쟁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마케팅, 디자인, 법률, 회계 및 세무 등)<br>■ 소재 수거·유통 및 세척·가공 시스템 구축<br>■ 새활용 기업별 맞춤형 소재 가공·공급방안 개발 | ■ 상용화된 새활용 제품을 보유한 기업<br>■ 공고일 기준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등록이 완료된 기업 |
| **도약** | ■ 기존 제품 혁신 및 제품군 확대를 위한 시제품 제작, 제작 툴 마련<br>■ 대량생산을 위한 생산·유통 시스템 구축<br>■ 소재·제품의 품질·성능·환경성 관련 인·검증 취득<br>■ 홍보·마케팅 및 판로 확대<br>■ 투자유치 활동(크라우드펀딩, 모의IR, 컨설팅 등)<br>■ 수출 지원(해외시장 조사·개척, 수출용 브랜드·제품 개발, 국내·외 전시회 참가·운영 등)<br>■ 친환경 공정개선<br>■ 경쟁력 향상을 위한 컨설팅(마케팅, 디자인, 법률, 회계 및 세무 등)<br>■ 소재 수거·유통 및 세척·가공 시스템 구축<br>■ 새활용 기업별 맞춤형 소재 가공·공급방안 개발 | ■ 업력 2년 이상 새활용 기업<br>■ 전년도 매출액이 3억원 이상으로 사업화 기반을 갖춘 기업 |

## □ 지원규모 ※ 집중육성 과제는 평가위원회의 검토를 통하여 선정(별도 신청 X)

○ (지원금액) 총 50억원 내외(90개사 내외)

| 분야 | | 지원기업 수 | 정부지원금 |
|---|---|---|---|
| 도전분야 | 일반 과제 | 24개사 내외 | 최대 14백만원 |
| | 집중 육성 과제 | 6개사 내외 | 최대 28백만원 |
| 성장분야 | 일반 과제 | 32개사 내외 | 최대 42백만원 |
| | 집중 육성 과제 | 8개사 내외 | 최대 84백만원 |
| 도약분야 | 일반 과제 | 17개사 내외 | 최대 126백만원 |
| | 집중 육성 과제 | 3개사 내외 | 최대 200백만원 |

※ 지원기업 수와 정부지원금은 기업별 예산 활용 계획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복수의 분야에 동시 지원 불가

※※ 집중 육성 과제: ①신규 새활용 소재 발굴을 통해 새활용 산업 소재 활용 범주 확대가 기대되는 지원과제 ②실생활 및 산업 전반의 현안 과제로 폐자원 처리의 새활용 방안 모색이 강하게 요구되는 소재를 새활용하는 지원과제로 **평가위원회의 검토를 통하여 선정(별도 신청 X)**

## □ 사업비 구성

○ 총 사업비는 정부지원금(A) 및 민간부담금(B)으로 구성

| 분야 | 정부지원금(A) | 민간부담금(B) | | |
|---|---|---|---|---|
| | | 계 | 현금 | 현물(인건비) |
| 도전, 성장, 도약 | 총 사업비의 70% 이하 | 총 사업비의 30% 이상 |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 총사업비의 15% 이상 | 민간부담금의 **50% 이하** = 총사업비의 15% 이하 |

※ 예비 창업자거나 매출이 없는 사업자는 현물(인건비) 사용 불가, 현금으로만 민간부담금 상정

○ 사업비 구성 예시(분야별 최대 지원금액 신청시)

| 분야 | 정부지원금(A) (70%) | 민간부담금(B) (30%) | 총사업비(A+B) |
|---|---|---|---|
| 도전분야 | 14,000,000원 | 6,000,000원 | 20,000,000원 |
| 성장분야 | 42,000,000원 | 18,000,000원 | 60,000,000원 |
| 도약분야 | 126,000,000원 | 54,000,000원 | 180,000,000원 |

## 3 지원사업 주요일정

□ 추진절차

| | |
|---|---|
| **사업시행 공고 및 신청·접수**<br>('26. 2월) | ▪ 온·오프라인 공고 및 온라인 접수 |
| ▼ | |
| **사업별 지원기업 및 과제 선정**<br>(~4월) | ▪ 선정평가(사전평가, 발표평가) |
| ▼ | |
|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br>(4월~11월) | ▪ 한국환경산업협회 ↔ 지원기업 |
| ▼ | |
| **(현장)중간점검**<br>(7~9월) | ▪ 지원기업 중간점검(현장점검 및 온라인 점검) |
| ▼ | |
| **사업종료**<br>(~'26. 11. 30.) | ▪ 한국환경산업협회 ↔ 지원기업 |
| ▼ | |
| **결과평가**<br>(12월) | ▪ 최종보고서 바탕 최종평가(협약기간 종료시점) |
| ▼ | |
| **정산 및 사후관리**<br>(정산: ~'27. 4월 / 사후관리: 5년) | ▪ 한국환경산업협회 ↔ 지원기업<br>- 성과관리·확산(홍보) 및 새활용 진흥사업 연계지원 |

□ 기업선정 일정(안)

○ (공고 및 접수)

– (공고) 2026. 2. 5.(목)~3. 5.(목) AM 11:00까지

– (접수) 2026. 2. 16.(월) AM 10:00~3. 5.(목) AM 11:00까지

※ 마감 당일 오전 11:00부터 제출 불가, 마감일은 시스템 접속 폭주로 인해 홈페이지 오류·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지연에도 접수기간 연장 불가(마감일까지 1~3일전 접수 권장)

※ 사업설명자료는 홈페이지 게재자료 참조, 필요시 유선 및 이메일 문의

○ (사전검토 및 서류심사) 2026. 3. 5.(목)~3. 19.(목)

○ (선정평가 대상 통보) 2026. 3. 19.(목)(선정평가 대상 및 일정은 개별통보)

| |
|---|
| **<선정평가 대상기업 제출 필요 자료>**<br>서류심사 통과 기업에 한하여 **3월 지정일 까지**<br>발표영상 및 PPT 자료를 사업담당자 이메일 제출(별도 안내 예정) |

○ (선정평가) 2026. 4. 2.(목)~4. 7.(화)

※ 평가방법 및 장소 등 평가 개최 세부 사항은 선정평가 대상 통보시 고지

○ (선정기업 최종 발표) 2026. 4. 8.(수) 이후

※ 상기 일정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 □ 사업 신청 방법

○ **(신청서 등 서식 확인)** 기후부e나라도움-새활용 종합포털 홈페이지

○ **(접수방법)** 지원사업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새활용 종합포털 홈페이지**(www.upcycleus.kr)**에서 온라인 신청**

**※ 방문·우편 접수(서면) 및 이메일 접수 불가,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만 가능**

– **(회원가입)** 기업회원으로 가입 및 로그인(예비창업자만 개인회원)

– **(제출방법)** 2개의 파일 제출(신청서, 별지서류)

· **(신청서)** PDF파일로 제출

· **(별지서류)** ZIP파일로 압축해서 제출

| 자격요건 확인 | → | 지원분야 선택 | → | 사업비 확인 | → | 신청서류 등록 |
|---|---|---|---|---|---|---|
| 참여제한 미해당 여부 등 확인 | | 지원분야별 지원요건 확인 | | 최대 신청 가능 사업비 및 자기부담금 확인 | | 제출서류 준비 및 기한 내 등록 |

## 4 제출서류

| 구 분 | | 제출서류 | 제출방법 |
|---|---|---|---|
| 기초 자료 | 공통 |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 신청서(공고 9~34페이지)<br>※ 신청서는 PDF파일로 전환하여 별지서류 외에 별도 첨부 | PDF 파일로 전환하여 첨부 |
| | | 청렴서약서(별지서류 1페이지) | 별지서류(한글 파일)→ ZIP파일로 압축 |
| | | 지원사업 신청 자가진단표(기타사항)(별지서류 2페이지) | |
| | | 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동의서(대표자용,담당자용)<br>(공고 35~36페이지) | |
| 사업자 등록 | 기업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 | 법인등기부 등본**(법인기업의 경우 제출)** | |
| | 예비창업자 | 사실증명원 | |
| 보험 | 기업 | 4대보험(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택 1) 완납증명서<br>※ 유효기간 내 증명서, 사업신청일 1개월 이내 발급 | |
| |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br>※ 유효기간 내 증명서, 사업신청일 1개월 이내 발급 | |
| | 예비창업자 | 국민연금, 의료보험 중 택 1<br>- 피 부양자: 본인의 자격득실확인서 및 부양자의 완납증명서<br>※ 유효기간 내 증명서, 사업신청일 1개월 이내 발급 | |
| 납세 | 공통 | 지방세 납세 증명서<br>※ 유효기간 내 증명서, 사업신청일 1개월 이내 발급 | |
| | | 국세 납세 증명서<br>※ 유효기간 내 증명서, 사업신청일 1개월 이내 발급 | |
| 재무 | 기업 | 2023, 2024년 재무제표(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포함)<br>**(법인기업의 경우 제출)**<br>※ 2년 이내 개업한 법인기업의 경우 개업일 이후부터 재무제표 제출 | |
| | | 2024년, 2025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br>※ 2년 이내 창업자의 경우 개업일 이후부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제출 | |
| | 예비창업자 | 미제출 | |
| 기타 | 성장·도약분야 신청기업 | 새활용 제품(소재) 판매 실적 증빙자료(세금계산서, 카드내역 등) | |
| 가점 | 공통 | 가점 제출 증빙서류 | |

## 5 선정평가 기준 및 가점

### □ 선정평가 평가기준

<table>
<tr><th colspan="4">선정평가</th></tr>
<tr><th>평가지표</th><th colspan="2">평가내용</th><th>배점</th></tr>
<tr><td>1. 정량지표<br>(10점)</td><td>새활용소재<br>탄소저감<br>효과<br>(10점)</td><td colspan="2"><table><tr><th>등급</th><th>소재</th><th>배점</th></tr><tr><td>A</td><td>고무</td><td>10</td></tr><tr><td>B</td><td>플라스틱</td><td>8</td></tr><tr><td>C</td><td>섬유, 도자기</td><td>6</td></tr><tr><td>D</td><td>목재, 종이</td><td>5</td></tr><tr><td>E</td><td>금속, 유리</td><td>4</td></tr><tr><td>F</td><td>유기성폐기물, 기타</td><td>3</td></tr></table></td><td>10점</td></tr>
<tr><td colspan="3">소 계</td><td>10점</td></tr>
<tr><td rowspan="8">2. 정성지표<br>(90점)</td><td rowspan="5">제품·소재<br>/서비스<br>(55점)</td><td>제품/서비스 특징, 경쟁사 대비 우위요소 및 가치제안</td><td>20점</td></tr>
<tr><td>새활용 제품·소재/서비스의 차별성, 혁신성</td><td>15점</td></tr>
<tr><td>새활용 제품·소재/서비스 완성도</td><td>10점</td></tr>
<tr><td>새활용 제품·소재 대량생산화 가능성</td><td>5점</td></tr>
<tr><td>새활용 제품·소재 생산공정 난이도 및 부가가치 증대</td><td>5점</td></tr>
<tr><td rowspan="3">조직<br>(20점)</td><td>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인식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의지</td><td>10점</td></tr>
<tr><td>새활용 기업의 마인드 및 성향(진취성, 혁신성, 위험감수성, 환경성 등)</td><td>5점</td></tr>
<tr><td>새활용 기업의 기술 전문성 및 경력/경험</td><td>5점</td></tr>
<tr><td rowspan="2">사업성<br>(15점)</td><td>신규시장 창출 가능성</td><td>10점</td></tr>
<tr><td>새활용 기업 사업 지속성</td><td>5점</td></tr>
<tr><td colspan="3">소 계</td><td>90점</td></tr>
<tr><td colspan="3">총 계</td><td>100점</td></tr>
<tr><th colspan="4">집중육성 과제 검토</th></tr>
<tr><td rowspan="3">소재역량<br>검토(50점)</td><td>소재 독창성<br>(20점)</td><td>일반적인 새활용 소재에서 벗어난 신소재로서의 새활용 산업 분야 확대 가능성</td><td>20점</td></tr>
<tr><td>소재개발계획<br>(15점)</td><td>소재 수급 및 가공 설비·체계 등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관련 전문기술 보유 여부</td><td>15점</td></tr>
<tr><td>소재전파력<br>(15점)</td><td>개발 소재의 새활용 기업 활용성 및 안정성, 새활용 산업 전반의 소재사용 확산 가능성</td><td>15점</td></tr>
<tr><td colspan="3">총 계</td><td>50점</td></tr>
</table>

□ (**가점사항(최대 5점)**) 신청기업 인증 및 가점 현황을 증빙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 등을 제출한 경우 인정

| 구분 | 번호 | 가점 항목 | 배점 |
|---|---|---|---|
| 사업 전문성 | 1 | 전년도 새활용 지원사업 "우수성공" 종료 기업(환경부) | 2 |
| 환경 우수성 | 2 | 환경성적표지 인증, 환경표지인증, 녹색인증 제품 보유 기업 (신청일 기준 인증 유효기간 내) | 1 |
| | 3 | 환경산업 분야 해외 또는 국내 특허, 실용신안 보유(상표권 제외) | 2 |
| | 4 | 환경신기술 검증 또는 인증기업(신청과제 해당 제품·소재에 한함) | 1 |
| | 5 | 기술성 진단 결과 우수 등급 이상 기업(기술보증기금(BB이상) 등) | 1 |
| 디자인 우수성 | 6 | 새활용(업사이클) 공모전 입상기업(또는 입상자) | 2 |
| | 7 | 디자인혁신기업 선정기업(최근 3년 이내) | 1 |
| | 8 | 디자인 분야 해외 또는 국내 특허, 실용신안 보유(상표권 제외) | 2 |
| 정책 부합성 | 9 |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 인증기업 | 1 |
| | 10 | 고용(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등록된 기업(신청일 기준 3년 이내)<br>- 정부 및 광역 자치단체 선정·등록 (2점)<br>- 기초 지자체 및 기타 단체 선정·등록 (1점) | 1~2 |
| | 11 | 영세기업(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고 매출 10억 미만),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 1 |

※ 가점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를 제출해야 인정됨(해당 기업에 한함)

## 6 신청시 유의사항

○ 지원사업 분야별 **필수 지원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후 **올바른 분야로 지원**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운영기관에서 책임지지 않음

○ 선정기업이 신청한 사업비는 평가위원회의 적정성 검토를 통하여 조정될 수 있음

○ 동일 단계 지원사업을 **3년 연속 수행**하였거나 **지원사업 수행이후 차년도 지원과정에서 지원금액이 낮은 지원분야로 하향지원**하는 경우 **중복지원 제한**

※ 기존 소재분야 수행기업은 예외

○ 신청기한 내 새활용 종합포털에서 온라인 신청 제출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 및 서류 심사를 진행하며,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 협회는 기업이 제출한 신청서 및 제출서류 확인 과정에서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1회에 한하여** 미비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하지 않는 경우 서류평가 탈락 조치**

○ 제출 자료가 거짓, 허위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 선정 이후에도 결과가 탈락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운영기관은 일부 참여제한 사항에 대해 사전 확인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기업 선정 이후 확인되는 경우에도 **협약 해지 및 정부지원금 환수가 될 수 있음**

○ 평가 결과는 별도 공지하며 관련 안내는 지원사업 신청시 작성한 **담당자 이메일로 안내,** 잘못된 정보를 작성하여 생기는 불이익은 운영기관에서 책임지지 않음

○ 신청기업은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반드시 숙지**해야 하며, 관련 법령사항 미숙지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운영기관에서 책임지지 않음

## 7 참여제한

○ 부도,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휴.폐업 중인 경우
○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환경관련 법률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영업·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받은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 제한 등 제재 조치 중인 경우
○ 신청기업 중 동일 사업계획으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 **최근 2년 연속 자본잠식 50% 이상인 법인사업자의 경우**
**※ 자본잠식률(%) = ((자본금-자본총계)÷자본금)×100**
○ **최근 2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법인사업자의 경우(제외대상: 대출이자가 없는 경우, 사회적기업 인증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업)**
**※ 이자보상배율: (매출액-매출원가-판매비와 관리비)÷이자비용**
○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 과제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중소벤처기업부의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www.sims.go.kr)에 의한 최근 3년(당해 연도 포함) 간 정부지원 이력 조회 등 포함)
○ **동일 단계 지원사업을 3년 연속 수행 하였거나 지원사업 수행이후 차년도 지원과정에서 지원금액이 낮은 지원분야로 하향지원하는 경우(기존 소재기업 수행기업 예외)**
○ 「보조금법」에 제31조의 2에 따라 수행배제 중인 경우

## 8 문의처

담당부서: 한국환경산업협회 새활용사업팀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38 센트럴타워 7층 703호(04505)
전화: 박지훈 팀장(02-6933-9516), 박소연 대리(02-6933-9517)

붙임 1.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 신청서 서식 1부.
2. 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각 1부. 끝.

[별지 제2-1호 서식]

#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 신청서

| | | | |
|---|---|---|---|
| **참여분야** | □ 도전분야 | □ 성장분야 | □ 도약분야 |
| **기업명** | | **사업자번호** | *예비사업자의 경우 "○○○-○○-○○○○○" 기입* |
| **대표 자** | | **사업자구분** | □ 법인사업자 □ 개인사업자 □ 예비사업자 |
| **설립일자** | | **임직원수** | *대표자를 포함한 소속기업 임직원 수* |
| **홈페이지** | | | |
| **본사** | | ☎ *000-000-0000* (Fax *000-000-0000* ) | |
| **공장** | | ☎ (Fax ) | |

| | | |
|---|---|---|
| **지원사업 참여현황** | □ 지원사업 수행이력 있음 | □ 지원사업 수행이력 없음 |
| | □ 참가년도(20 년, 20 년)<br>※ 기후에너지환경부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 수행이력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 |

| **기업현황** | **n-2년** | **n-1년** | **비고** |
|---|---|---|---|
| **자본금** | *00* 원 | *00* 원 | 평균 *00* 원 |
| **총 매출액** | *00* 원 | *00* 원 | 평균 *00* 원 |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x100)* | | |

| | | | | |
|---|---|---|---|---|
| **사업책임자** | **성명** | | **직위** | |
| | **소속부서** | | **office 전화** | |
| | **e-mail** | | **휴대전화** | |

상기 신청기업은 '20 년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 부채, 채무불이행 등 기업 및 대표이사(임원)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자 : (인)

**운영기관장 귀하**

# 지원사업 신청 참여제한 자가진단

| 참여제한 | 해당여부 |
|---|---|
| 1. 부도 또는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
| 2.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 □ |
| 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 | □ |
| 4. 휴・폐업 중인 경우 | □ |
| 5. 사업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환경관련 법률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의 조업・영업・사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받거나 그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처분받은 경우 | □ |
| 6. 제29조에 따라 제재 중인 경우 | □ |
| 7. 신청기업 중 동일 사업계획으로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 □ |
| 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중인 경우 | □ |
| 9. 사업화 목적이 아닌 연구개발 목적인 경우 | □ |
| 10. 최근 2년 연속 자본잠식 50% 이상인 법인사업자의 경우<br>※ 자본잠식률 계산식: ((자본금-자본총계)÷자본금)×100 | □ |
| 11. 최근 2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법인사업자의 경우 (제외대상: 대출이자가 없는 경우, 사회적기업 인증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업)<br>※ 이자보상배율 계산식: (매출액-매출원가-판매비와 관리비)÷이자비용 | □ |
| 12. 공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 과제로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의 지원을 받은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의중소기업통합관리시스템(www.sims.go.kr)에 의한 최근 3년(당해 연도 포함) 간 정부지원이력 조회 등 포함) | □ |
| 13. 동일 단계 지원사업을 3년 연속 수행하였거나 지원사업 수행 이후 차년도 지원과정에서 지원금액이 낮은 지원분야로 하향지원 하는 경우<br>※ 예시<br>- '23년~'25년 도약분야 수행한 경우: '26년 지원사업 참여 제한<br>- '23년·'25년 성장분야 수행한 경우('24년 미수행): '26년 지원사업 참여 가능<br>- '24년 성장분야 수행하였으나, '26년 도전분야로 신청한 경우: '26년 지원사업 참여 제한 | □ |
| 14.「보조금법」에 제31조의 2에 따라 수행배제 중인 경우 | □ |

위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사업 신청이 불가하며,
허위로 작성시 선정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기 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운영기관장 귀하**

#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 □ 기업 현황

### 1. 사업책임자 정보

| | | | | | |
|---|---|---|---|---|---|
| 성 명 | 국 문 | | 한 자 | 생년월일 | . . . |
| | 영 문 | | | | |
| 직 장 | 기업명 | | | 전 화 | - - |
| | 직 위 | | | F A X | - - |
| | 부 서 | | | 휴대전화 | - - |
| | 주 소 | 우편번호 | | E-mail | |
| | | | | | |

| 경 력 | | | | |
|---|---|---|---|---|
| 부터 | 까지 | 회사(단체).연구명 | 직위(직명) | 주요업무내용 |
| | | | | |
| | | | | |
| | | | | |

### 2. 참여인력(직급, 학력, 업무) ※ 보수 현물 산정 대상자 전원 기입

| 성명 | 부서 (직위) | 경력 기간 | 최종학위 (학교/전공) | 생년월일 | 담당업무 및 역할 | 연락처 |
|---|---|---|---|---|---|---|
| | | | | | *신청기업 내 담당업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최근 3년 이내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지원사업 수혜 이력

| 타 지원사업 수혜이력 | | | | | |
|---|---|---|---|---|---|
| 지원기관 | 지원사업명 | 과제명/아이템 | 지원시작일 | 지원종료일 | 지원금액(원) |
| *환경산업기술원* | *에코스타트업* | | *yy-mm-dd* | *yy-mm-dd* | *100,00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 수행이력

| 연번 | 해당연도 | 과제명 | 본 과제와의 차별성 |
|---|---|---|---|
| 1 | | | |
| 2 | | | |
| 3 | | | |

※ 여기부터 20page 내외로 작성하며, 글자 크기 11~14pt, 줄간격 140~160%로 설정 가능.
※ 양식은 변경 또는 삭제 불가하고, 도표는 행 추가 가능하며, 필요시 사진(이미지) 또는 도표 추가 가능
※ '점선 박스의 파란색 안내 문구'는 삭제하고 제출

# □ 기업 및 주력 제품 소개

## 1. 기업 개요

※ 기업 소개 100자 이내로 기입

## 2. 주력제품 개요 및 사진

※ 소재와 활용 용도, 활용사례 등 제품의 강점을 100자 이내로 기입
※ 상용화된 새활용 제품이 있을 경우 해당 자료, 상용화된 새활용 제품이 없을 경우 주력제품 자료 작성
※ 제품사진 및 시연 사례 등 사진자료 및 설명자료 첨부

## 3. 새활용산업 연관성

※ 해당 제품과 새활용 산업의 연관성을 100자 이내로 기입

## 4. 소재 수급

※ 기존 활용하고 있는 새활용 소재가 있는 경우 해당 소재 수급처, 수급현황, 사용량 등 작성
※ 현재 활용하고 있는 새활용 소재가 없거나 사업화를 통해 활용계획인 소재 정보는 "□사업계획" 항목에서 작성

## □ 사업 계획 요약

※ 지원사업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요약하여 1페이지를 넘지 않도록 작성
※ 파란색 안내문구 삭제 후 제출

| | | | |
|---|---|---|---|
| **과제명** | | | |
| **기업명** | | **대표자명** | |
| **정부지원금** | | **민간부담금** | |
| **취급 소재** | *※ 소재의 수급처, 환경적 효과 등 소개(100자 이상)* | | |
| **제품(소재) 소개** | *※ 지원사업으로 제작하고자 하는 제품 또는 소재 설명(100자 이상)* | | |
| **기타 사업 수행 계획** | *※ 지원사업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 계획 요약(인검증, 전문가 활용, 홍보 등)* | | |

## □ 사업 계획

### 1. 신청과제명

※ 지원사업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 (간략하고 핵심적으로 1문장으로 작성)

*지원사업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화 목표 작성*

### 2. 사업화 새활용 소재

※ 사업화를 통해 새활용하고자 하는 소재에 대해 작성(기존 활용하고 있는 소재가 아닌 이번 사업화를 통해 새활용하고자 하는 소재에 대해 상세하게 작성
※ 새활용 소재만을 작성하며 복수의 새활용 소재를 사업화할 경우 주요 새활용 소재 중 사용 비중이 높은 소재 2가지를 선별하여 작성

#### 가. 새활용 소재 1

| 소재명 | | 수급처 (구매처) | |
|---|---|---|---|
| 주요성분 | □ 고무 □ 플라스틱 □ 섬유 □ 도자기 □ 목재 □ 종이<br>□ 금속 □ 유리 □ 유기성폐기물 □ 기타( ) | | |
| 확보방식 | □ 구매 □ 무상수거 □ 유상수거 □ 확보방식 물색예정 | | |
| 보유여부 | □ 확보(구매)완료 □ 확보(구매)예정 □ 확보(구매)처 물색 예정 | | |
| 소재설명 | | | |
| *새활용 소재 설명 및 사진자료 첨부* | | | |

**나. 새활용 소재 2**

| | | | |
|---|---|---|---|
| **소재명** | | **수급처 (구매처)** | |
| **주요성분** | ☐ 고무 ☐ 플라스틱 ☐ 섬유 ☐ 도자기 ☐ 목재 ☐ 종이<br>☐ 금속 ☐ 유리 ☐ 유기성폐기물 ☐ 기타( ) | | |
| **확보방식** | ☐ 구매 ☐ 무상수거 ☐ 유상수거 ☐ 확보방식 물색 예정 | | |
| **보유여부** | ☐ 확보(구매)완료 ☐ 확보(구매)예정 ☐ 확보(구매)처 물색 예정 | | |
| **소재설명** | | | |
| *새활용 소재 설명 및 사진자료 첨부* | | | |

## 3. 필요성

※ 해당 과제를 추진해야 하는 사유 및 필요성에 대하여 작성

지원사업을 통해 해당 소재를 새활용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 작성 (국내외 동향 및 발생 현황 등)
산출하고자 하는 사업화 결과물의 경쟁력 및 시장 수요 등 분석 자료가 있다면 작성
외부 자료 활용시 2페이지가 넘지 않도록 편집하여 작성

## 4. 추진일정

※ 지원사업 협약기간 동안 일정별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추진내용 및 행 수정, 추가 가능)
※ 사업종료 기간인 11월 이내에 완료할 수 있는 계획을 작성

| 추진내용 | 추진기간(월) | 세부내용 |
|---|---|---|
| *시제품 제작* | *4~7* | *시제품 디자인 작업* |
| *홍보물 제작* | *8~10* | *홈페이지 제작* |
| *시험분석의뢰* | *9~11* | *새활용인증 취득* |
| *전시회 참가* | *11* | *OO전시회 참가*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요 사업비 활용 계획

※ 지원사업 협약 기간 내 활동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재
(해당사항 없는 경우 삭제, 파란색 안내문구 삭제 후 제출)

### 1. 기자재 구입

※ 사업비로 구매하여 확보되는 기자재를 작성하며 외주용역을 통해 설계 및 맞춤형 제작해야 하는 항목은 4. 설비 외주제작에 기재

| | | | |
|---|---|---|---|
| **기자재명** | | **구매처** | |
| **구매목적** | | **도입시기** | |
| **사진자료** | | | |

| | | | |
|---|---|---|---|
| **기자재명** | | **구매처** | |
| **구매목적** | | **도입시기** | |
| **사진자료** | | | |

| | | | |
|---|---|---|---|
| **기자재명** | | **구매처** | |
| **구매목적** | | **도입시기** | |
| **사진자료** | | | |

| | | | |
|---|---|---|---|
| **기자재명** | | **구매처** | |
| **구매목적** | | **도입시기** | |
| **사진자료** | | | |

※ 필요시 연장 작성

## 2. 부품·재료 구입

※ 사업비를 활용하여 새활용 제품의 사업화를 이루는 데 필요한 부품•재료(기자재의 부품, 새활용 소재 및 부자재에 대한 항목) 기재
※ 범용성 장비, 소프트웨어, 소비품은 인정되지 않음

| | | | |
|---|---|---|---|
| **부품재료명** | | **구매수량** | |
| **구매목적** | | **구매시기** | |
| **사진자료** | | | |

| | | | |
|---|---|---|---|
| **부품재료명** | | **구매수량** | |
| **구매목적** | | **구매시기** | |
| **사진자료** | | | |

| | | | |
|---|---|---|---|
| **부품재료명** | | **구매수량** | |
| **구매목적** | | **구매시기** | |
| **사진자료** | | | |

| | | | |
|---|---|---|---|
| **부품재료명** | | **구매수량** | |
| **구매목적** | | **구매시기** | |
| **사진자료** | | | |

※ 필요시 연장 작성

### 3. 시제품 외주제작

※ 외주제작을 통해서 새활용 제품을 제작하는 경우 내용 작성

| | | | | |
|---|---|---|---|---|
| **제품명** | | | **제작수량** | |
| **업무분장** | **자사** | | | |
| | **외주업체** | | | |
| **개발단계** | □ 아이디어 구상 □ 설계 □ 목업 | | **완료시기** | |
|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 | *자사에서 기존에 보유한 제품과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하고자 하는 제품과의 차별성을 구체적으로 작성* | | | |

| | | | | |
|---|---|---|---|---|
| **제품명** | | | **제작수량** | |
| **업무분장** | **자사** | | | |
| | **외주업체** | | | |
| **개발단계** | □ 아이디어 구상 □ 설계 □ 목업 | | **완료시기** | |
|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 | | | | |

| | | | | |
|---|---|---|---|---|
| **제품명** | | | **제작수량** | |
| **업무분장** | **자사** | | | |
| | **외주업체** | | | |
| **개발단계** | □ 아이디어 구상 □ 설계 □ 목업 | | **완료시기** | |
| **기존 제품과의 차별성** | | | | |

※ 필요시 연장 작성

## 4. 설비 외주제작

※ 외주제작을 통해서 새활용 제품제작 설비를 구축할 경우 사용
※ 단순 견적·구매로 완성되는 항목은 1. 기자재 구입 항목에 작성

| | | | | |
|---|---|---|---|---|
| **설비명** | | | **협력처** | |
| **업무분장** | **자사** | | | |
| | **외주업체** | | | |
| **개발단계** | □ 아이디어구상 □ 설계 □ 목업 | | **완료시기** | |
| **설비도입 예상 효과 작성** | | | | |

※ 필요시 연장 작성

## 5. 홍보 외주제작

※ 홈페이지 제작, 촬영 등 외주제작을 통해서 기업 홍보체계 구성을 위한 항목 작성

| | | | |
|---|---|---|---|
| **계획** | | **완료시기** | |
| **주요내용** | | | |
| **기대효과** | | | |

| | | | |
|---|---|---|---|
| **계획** | | **완료시기** | |
| **주요내용** | | | |
| **기대효과** | | | |

※ 필요시 연장 작성

## 6. 전문가 활용비

※ 컨설팅, 기술자문 등 해당하는 계획 작성

| 계획 | | 의뢰처 | |
|---|---|---|---|
| 필요성 | | | |
| 주요내용 | | | |
| 기대효과 | | | |

| 계획 | | 의뢰처 | |
|---|---|---|---|
| 필요성 | | | |
| 주요내용 | | | |
| 기대효과 | | | |

※ 필요시 연장 작성

## 7. 안내 홍보물 제작

※ 제품 홍보자료 출력, 기업 소개 홍보물품 제작에 필요한 사항 작성

| 계획 | | 완료시기 | |
|---|---|---|---|
| 주요배포처 | | 수량 | |
| 주요내용 | | | |
| 기대효과 | | | |

※ 필요시 연장 작성

## 8. 소모성 물품 구입

※ 기업 사업화를 위해 참고할 수 있는 샘플 구매 희망 항목 작성(최대 200만원까지 활용 가능)

| | | | |
|---|---|---|---|
| **계획** | | **완료시기** | |
| **기대효과** | | **수량** | |
| **주요내용** | *구매하고자 하는 브랜드, 제품군 등 작성* | | |
| **사진자료** | | | |

※ 필요시 연장 작성

## 9.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인검증, 시험분석, 기술이전, 특허 취득 관련 추진계획 작성(사용료에 해당하는 항목은 별도 작성 필요 없으며 □ 비목별 소요명세서 부분에만 작성

| | | | |
|---|---|---|---|
| **구분** | □ 인·검증 □ 시험분석 □ 특허 □ 기술가치평가 □ 기타( ) | | |
| **계획** | | **평가처** | |
| **주요내용** | | | |
| **기대효과** | | | |

| | | | |
|---|---|---|---|
| **구분** | □ 인·검증 □ 시험분석 □ 특허 □ 기술가치평가 □ 기타( ) | | |
| **계획** | | **평가처** | |
| **주요내용** | | | |
| **기대효과** | | | |

※ 필요시 연장 작성

## 10. 행사 지원 경비

※ 전시회 참가, 온·오프라인 팝업스토어, 및 기타 기업 주관 새활용 행사
- 기업과 새활용 제품 홍보를 위한 추진계획 작성

| | | | |
|---|---|---|---|
| **행사명** | | **주관** | |
| **예정일시** | | **장소** | |
| **주요활동 계획** | | | |
| **기업의 행사추진 레퍼런스 또는 행사정보** | | | |

| | | | |
|---|---|---|---|
| **행사명** | | **주관** | |
| **예정일시** | | **장소** | |
| **주요활동 계획** | | | |
| **기업의 행사추진 레퍼런스 또는 행사정보** | | | |

※ 필요시 연장 작성

## 11. 홍보비

※ 사업화를 통해 산출된 결과물의 홍보 및 판매 확산을 위한 광고계획 작성

| | | | |
|---|---|---|---|
| **계획** | | **추진현황** | □ 신규<br>□ 기존 운영사항 확대 |
| **기간** | | **플랫폼** | |
| **추진방법** | □ 자체추진 □ 운영대행사 의뢰(대행사명: ) | | |
| **주요내용** | | | |
| **광고예시** | | | |

| | | | |
|---|---|---|---|
| **계획** | | **추진현황** | □ 신규<br>□ 기존 운영사항 확대 |
| **기간** | | **플랫폼** | |
| **추진방법** | □ 자체추진 □ 운영대행사 의뢰(대행사명: ) | | |
| **주요내용** | | | |
| **광고예시** | | | |

※ 필요시 연장 작성

## 12. 해외 출장 여비

※ 사업화를 통해 산출된 결과물의 홍보 및 판매 확산을 위한 해외 출장 계획 작성(도약분야만 가능)
※ 11. 행사 지원경비에 작성한 국내 출장 행사는 작성 불필요하며 해외 출장일 경우 반드시 기재

<table>
<tr><td>행사명</td><td colspan="3"></td><td>장소</td><td></td></tr>
<tr><td>출장기간</td><td colspan="3"></td><td>출장인원</td><td></td></tr>
<tr><td>참여목적</td><td colspan="5"></td></tr>
<tr><td>바이어<br>및<br>행사정보</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3">출장자<br>업무분장</td><td rowspan="3">출장자명</td><td></td><td rowspan="3">주요업무</td><td colspan="2"></td></tr>
<tr><td></td><td colspan="2"></td></tr>
<tr><td></td><td colspan="2"></td></tr>
</table>

<table>
<tr><td>행사명</td><td colspan="3"></td><td>장소</td><td></td></tr>
<tr><td>출장기간</td><td colspan="3"></td><td>출장인원</td><td></td></tr>
<tr><td>참여목적</td><td colspan="5"></td></tr>
<tr><td>바이어<br>및<br>행사정보</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3">출장자<br>업무분장</td><td rowspan="3">출장자명</td><td></td><td rowspan="3">주요업무</td><td colspan="2"></td></tr>
<tr><td></td><td colspan="2"></td></tr>
<tr><td></td><td colspan="2"></td></tr>
</table>

※ 필요시 연장 작성

## □ 결과물 및 활용계획

### 1. 예상 결과물

※ 사업화 결과물로 제작 계획인 새활용 제품에 대한 예상 산출물 정보 작성

| 제품명 | | 주요소재 | |
|---|---|---|---|
| 제작방식 | □ 자체생산 □ 외주생산 | 제작수량 | |
| 제작형태 | □ 신규 제품군 생산 □ 기존제품 고도화( 기존제품과의 차별성 기입 ) | | |
| 예상 제품정보 | 새활용 소재 비율 | ( )% | |
| | 월 예상 생산량 | ( )개/월 | |
| | 단가 | ( )원 | |
| 활용계획 | | | |
| *제작한 새활용 제품은 유상 판매 할 수 없고 샘플테스트, 홍보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제작 수량에 대한 활용계획 작성* | | | |

| 제품명 | | 주요소재 | |
|---|---|---|---|
| 제작방식 | □ 자체생산 □ 외주생산 | 제작수량 | |
| 제작형태 | □ 신규 제품군 생산 □ 기존제품 고도화( 기존제품과의 차별성 기입 ) | | |
| 예상 제품정보 | 새활용 소재 비율 | ( )% | |
| | 월 예상 생산량 | ( )개/월 | |
| | 단가 | ( )원 | |
| 활용계획 | | | |
| *제작한 새활용 제품은 유상 판매 할 수 없고 샘플테스트, 홍보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제작 수량에 대한 활용계획 작성* | | | |

※ 필요시 연장 작성

## 2. 판매, 생산체계 구축 등 사업화 전략

※ 지원사업을 통해 산출한 시제품, 생산체계 개성 등 도출한 사업화 성과물을 활용해 지원기업이 사업화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

*(예시)*
*가. 제품의 특장점:*

*나. 목표대상군 선정:*

*다. 홍보전략 수립:*

*라. 판매전략 수립:*

## 3. 사업화 성장목표

※ 협약기간 동안 지원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화 목표에 따른 정량 및 정성지표 기술
※ 계획대비 달성도를 평가할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를 구체적으로 작성

| 구분 | 항목 | 성과지표명 | 목표치 | 현재 도달 수준 |
|---|---|---|---|---|
| 정량 지표 | ex) 판로 확대 | 판매처 확대(온·오프라인 포함)(단위: 개수) | 5개 | 2개 |
| | ex) 제품 디자인 출원 | ㅇㅇ 디자인 등록 3종류(단위: %) | 100% | 0% |
| | 필요 시 추가가능 | | | |
| 정성 지표 | ex) 고객 만족도 | 제품에 대한 고객만족도 | 우수 | 보통 |
| | | | | |
| | | | | |

## 4. 향후 성장계획

※ 3년간 중기 목표 기재하며, 새활용 기업으로서의 장기적 성장 목표 및 비전을 기술

| 구분 | 사업목표 | 사업내용 | 매출목표액 (억원) | 고용인원 (명) |
|---|---|---|---|---|
| 1차년도 (n년) | | | 당해연도 전체 목표액 작성 | 당해연도 전체 고용인원 작성 |
| | | | | |
| | | | | |
| 2차년도 (n+1년) | | | | |
| | | | | |
| | | | | |
| 3차년도 (n+2년) | | | | |
| | | | | |
| | | | | |

## □ 사업비 소요명세

### 1. 사업비 소요명세서

※ 모든 금액은 지침 별표 2에 따른 비목별 계상기준에 의거하여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으로 작성

(단위 : 천원)

| 보조비목 | 보조세목 | 사업용도 | 현금 | 현물 | 비고 |
|---|---|---|---|---|---|
| **사업비 총계** | | | | | |
| 인건비 | 보수 | 참여자 인건비 | X | *현물계상만 가능* | |
| | 일용임금 | 단기채용 인건비 | X | | |
| 운영비 | 재료비 | 기자재 구입 | | | *정부지원금의 최대 50%* |
| | | 부품·재료 구입 | | | |
| | 일반용역비 | 시제품 외주제작 | | | *정부지원금의 최대 70%* |
| | | 설비 외주제작 | | | |
| | | 홍보 외주제작 | | | |
| | | 전문가 활용비 | | | |
| | 일반수용비 | 안내홍보물 제작비 | | | |
| | | 소모성 물품 구입비 | | | *200만원 이내* |
| |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 | |
| | | 행사 지원 경비 | | | |
| | | 홍보비 | | | *총사업비 10%이내* |
| 여비 | 국내여비 | 국내여비 | | | *정부지원금의 최대 30% (국외는 도약 분야만 가능)* |
| | 국외여비 | 국외여비 | | | |

### 2. 사업비 구성현황

※ 사업비 구성 참고사항
① 사업비 구성: 정부지원금 70% 이하, 민간부담금 30% 이상
② 민간부담금 구성: 민간부담금 총액 중 최대 50% 인건비 현물 계상 가능(단 신청기업에서 매출이 발생하고 조직에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단위 : 천원)

| 사업비 총액 (정부지원금+민간부담금) | 정부지원금 *(00%)* | 민간부담금 *(00%)* | |
|---|---|---|---|
| | | 현금 *(00%)* | 현물 *(00%)* |
| | | *민간부담금의 최소 50% 이상 계상* | *민간부담금의 최대 50%까지 가능* |

## □ 비목별 소요명세

### 1. 보수

(단위 : 천원)

| 구 분 | 성 명 | 직위 | 실지급액 (A) | 참여기간 (B)월단위* | 참여율(%) (C) | 합 계(A×B×C) | |
|---|---|---|---|---|---|---|---|
| | | | | | | 금액 | 고용 월 |
| 인건비 (현물) | | | *월급여액 (세전금액)작성* | | | | *YY.MM*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협약기간 내 인건비만 현물산정 가능

* 신청기업 소속 대표 및 4대보험 지급 대상 임직원의 현물 산정 가능한 인건비 작성

### 2. 일용임금

(단위 : 천원)

| 구 분 | 활동계획 | 성 명 | 단가 (A) | 참여기간 일단위 (B) | 합계 (A×B) |
|---|---|---|---|---|---|
| 인건비 (현물) | | | | *YY.MM.DD~YY.MM.DD (N일)*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신청 시 단기채용 인력 성명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 인원수로 작성하며, 단기채용 인력의 인건비를 직접 지급할 수 없음(신청기업의 지급 내역 증빙을 통해 현물 산정)

### 3. 재료비

(단위 : 천원)

| 보조세목 | 사업용도 | 내역 | 단 가 | 횟수 (수량,건) | 금 액 |
|---|---|---|---|---|---|
| 재료비 | 기자재 구입 | *필요 시 추가 가능* | | | |
| | | | | | |
| | | | | | |
| | 부품·재료 구입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천원 | | | | |

## 4. 일반용역비

(단위 : 천원)

| 보조세목 | 사업용도 | 내역 | 단 가 | 횟수<br>(수량,건) | 금 액 |
|---|---|---|---|---|---|
| 일반용역비 | 시제품<br>외주제작 | *필요 시 추가 가능* | | | |
| | | | | | |
| | | | | | |
| | 설비<br>외주제작 | | | | |
| | | | | | |
| | | | | | |
| | 홍보<br>외주제작 | | | | |
| | | | | | |
| | | | | | |
| | 전문가<br>활용비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천원 |

## 5. 일반수용비

(단위 : 천원)

| 보조세목 | 사업용도 | 내역 | 단 가 | 횟수<br>(수량,건) | 금 액 |
|---|---|---|---|---|---|
| 일반<br>수용비 | 안내홍보물<br>제작비 | *필요 시 추가 가능* | | | |
| | | | | | |
| | | | | | |
| | 소모성 물품<br>구입비 | | | | |
| | | | | | |
| | | | | | |
| | 각종 수수료<br>및 사용료 | | | | |
| | | | | | |
| | | | | | |
| | 행사 지원 경비 | | | | |
| | | | | | |
| | | | | | |
| | 홍보비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천원 |

## 6. 국내여비

(단위 : 천원)

| 보조세목 | 사업용도 | 내역 | 단 가 | 횟수<br>(수량,건) | 금 액 |
|---|---|---|---|---|---|
| 여비 | 국내여비 | *필요 시 추가 가능*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천원 |

## 7. 국외여비

(단위 : 천원)

| 보조세목 | 사업용도 | 내역 | 단 가 | 횟수<br>(수량,건) | 금 액 |
|---|---|---|---|---|---|
| 여비 | 국외여비 | *필요 시 추가 가능*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천원 |

## □ 입찰 필요사항(동일거래처 20백만원(이천만원) 이상 거래 건 작성)

※ 동일한 거래처에서 부가세 포함 20백만원 이상 지출 할 경우 **나라장터 또는 조달청 입찰을 통해** 기업을 선정해야 하며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지출계획은 아래에 작성 필요

(단위 : 천원)

| 거래처 | 지출내용 | 금액 | 총액 | 필요성 |
|---|---|---|---|---|
| *OO상사* | *XX원사 구매* | *5,000* | *24,000* | *새활용 소재 가공부터 제작까지 일원화 협력하면서 사업 추진* |
| | *XX원단 제직* | *7,000* | | |
| | *시제품 X종 제작* | *12,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1-1호 서식]

# 기업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동의서(대표자용)

□ 본인은 사업신청서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사업에 필요한 서류 일체)에 기재된 기업(신용)정보 및 관련된 기업(신용)정보(대출, 보증, 담보, 제공, 당좌거래 등 금융정보, 동 사업의 신청 이전 및 이후 취득한 기업 (신용) 정보 포함)를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 제공.이용자 등에게 제공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로써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지원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당사의 정보(업체명, 대표자명, 지원결정일, 지원분야, 사업계획, 지원금액, 재무현황 등)를 본 사업의 이행, 관리, 유지 및 정책적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 사업의 지원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필요한 서류 일체)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동 사업을 신청한 경우에는 동 사업의 지원 결정취소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 상기 사항에 기업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기 업 :
사업자등록번호 :
대 표 자 : (인)

## 운영기관장 귀하

※ 본인은 기업신용정보 제공·활용 및 이용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별지 제1-2호 서식]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활용동의서(담당자용)

□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운영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 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가. 수집·이용 목적: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 관련 상담, 사업지원 여부 결정, 협약 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등

나. 수집·이용할 항목

1) 개인 식별 정보: 성명, 주소, 연령,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FAX번호,

2) 그 외 소속(기관명, 부서, 직위), 학력(학교, 전공, 학위, 재학기간), 경력(기관명, 부서, 근무기간, 등)

다. 보유·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협약 종료일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되며 협약 종료일 후에는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및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 관리업무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협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과의 거래 관계가 설정, 유지 가능합니다. 위 개인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 선정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제공에 관한 사항

가. 제공받는 자: 기후에너지환경부, 운영기관 및 평가위원회 등

나.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평가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등

다.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 식별 정보, 소속, 학력, 경력 등

라. 제공받은 자의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 개인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목적과 관련된 분쟁 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마.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는 협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새활용 산업 육성 지원사업 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 | |
|---|---|
| 수집.이용 동의 |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br>**(□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제공 동의 |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br>**(□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 상기 사항에 대해 운영기관의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활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생 년 월 일 :

동의자 성명 : (인)

## 운영기관장 귀하

※ 사업수행계획서상 기재된 기업 인원 모두 기재(개인별로 1장씩 작성 및 제출)